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
유흥업소 내 여성종업원들의 인식조사 및
업주들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정 승 민

(백석문화대학 공무원학부 경찰행정전공 교수)

홍 태 경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시간강사)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유흥업소 내 여성종업원들의 인식조사 및 업주들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정 승 민*

홍 태 경**

【국문요약】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집창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지면서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는 양상으로 변질되었을 뿐 근절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나 선불금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의 보호대상인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성을 매매하는 여성일 뿐 이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연구는 특정 페미니즘 시각이나 형사정책적 논쟁을 뛰어 넘어 보다 합리적인 성매매 정책 및 성매매여성의 인권향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시작되었다. 이에 성매매 합법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유흥업소 내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인식조사 결과, 성매매 합법화가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86%로 높게 나타나 합법화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합법화 이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의무로서의 세금징수 및 근로자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이 각각 71%와 49%로 나타났다. 업주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여성들의 근로환경이나 권익신장에 이로울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업주들 역시 세금을 내고 몇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 백석문화대학 공무원학부 경찰행정전공 교수(제1저자)

**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시간강사(교신저자)

것이 더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가 제대로 된 성매매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관리·감독한다면, 성매매 합법화가 우리사회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가 야기할 악영향을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성매매정책이 성매매근절을 가져올 수 없다면 보다 합리적인 성매매정책 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성매매, 성매매여성, 성매매정책, 성매매 합법화

목차
I. 서론
II. 성매매정책에 대한 논쟁들
III. 성매매정책에 대한 유흥업소내 여성종업원들의 인식조사
IV. 성매매정책에 대한 유흥업소 업주들과의 심층면접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I. 서론

2000년과 2001년에 잇따라 발생한 집창촌 화재참사는 성매매여성 및 성매매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윤락’이라는 단어 대신 ‘성 사고 팔기’를 의미하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이호중, 2002: 16),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여성에게 ‘피해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또한 집창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고 시민들에게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¹⁾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성매매한 자로 구분함으

1) 여성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문화·성인식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성은 73.5%(2005년)에서 84.2%(2008년)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48.2%(2005년)에서 75.0%(2008년)으로 증가하였다(경주인터넷신문, 2008년 9월 16일자).

로써 다수의 성매매여성을 여전히 범죄자의 신분에서 머물게 하였고, 성매매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이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만 만들었다. 단적인 예로 ‘성병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실적’을 보면, 2003년 15만 6,444명이던 검진등록자가 2008년 상반기에 8만 539명까지 감소되었고, 실제 검진건수도 2003년 267만4320건에서 2008년 상반기에 65만 8,25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대상자에서 범죄자신분으로 전락한 성매매여성이 검진장소에서 체포당한 일까지 발생하자 건강검진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²⁾

또한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기대되었던 성산업의 축소와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화는 하나의 이상일 뿐이라는 것이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단속의 강화로 오히려 휴게텔, 안마시술소, 티켓다방 등을 통한 음성적인 성매매유형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으며, 집창촌을 떠났던 성매매여성들도 수입부족이나 사회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집창촌으로 되돌아왔다.³⁾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연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여성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 규제정책의 집행대상이 되는 성매매여성과 업주들의 입장과 의견을 살펴보고자 이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현재 집창촌은 사라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는 어려움이 있어 이들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유흥업소내 여성종업원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상

2)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별 검진실적’을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이같이 밝혔다(메디컬투데이, 2008년 10월 14일자).

3)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성매매여성의 64.5%(644명)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새로 사창가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35.5%(355명)는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사창가 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355명 중 302명(85%)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창가를 떠났다가 1년 반이 못 돼 다시 이 생활을 시작했고 53명은 떠나지 않고 버틴 경우다. 다시 돌아온 302명의 복귀 시기는 2005년 7월 이후(70.5%)에 몰려 있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급속히 효과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귀자 중 절반 이상인 54%(중복 응답)는 사창가를 떠났던 기간에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티켓다방 등에서 일하거나 인터넷 성매매, 출장마사지 일을 했다고 답변했다. 사창가에 돌아온 이유로는 ‘수입 부족’을 꼽은 여성이 34.6%(344명)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생활 부적응’(19.8%), ‘일하기가 어렵다’(11.6%) 등이 뒤를 이었다(남서울대학교, 2006: 11-15; 44-52).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⁴⁾ 다음에서는 인식조사에 앞서 성매매 규제정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 합법화에 의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을 가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II. 성매매정책에 대한 논쟁들

성매매에 대한 정책기조는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시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나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여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개인적 시각은 물론, 국가의 정책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범죄화, 비범죄화, 합법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입장에서건 포주에 의한 성매매, 인신매매나 약물을 매개로 강요된 성매매, 미성년자에 의한 성매매에 대한 불법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국가정책수립에 관해서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 비범죄화, 합법화 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성매매 범죄화에 대한 논의

성매매 범죄화는 단순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매매 강요나 알선행위 등 일체의 성매매 관련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입장이다. 포주와 알선자는 물론이고,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 범죄화에 대한 근거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4) 문제는 성매매로 실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락 및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기존 논의는 거의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설문조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좀 더 나은 성매매정책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근거는 성매매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이 논변은 결혼관계나 생식과 연결되지 않은 성은 그 자체가 불순하다는 종교적 신념과 전통적인 도덕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매춘부들이나 결혼관계를 벗어나 성관계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쏟아지는 ‘타락한 존재’ 혹은 ‘더럽혀진 몸’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이를 증명한다(하주영, 2002: 330; 이정재, 2007: 175).⁵⁾ 이러한 도덕주의적 관점은 유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하였고, 성매매여성을 ‘윤락여성’으로 지칭하였다는 점, 윤락여성만을 처벌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이 이러한 관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매매는 사회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므로 범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매매가 성병을 확산시키고, 조직범죄나 약물범죄와 같은 다른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⁶⁾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그릇된 여성관이나 성의식을 심어주고 성에 관한 문란한 사회풍조를 조장하므로 성매매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물건과 서비스가 금전을 매개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만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성에 대한 계약과 합의는 ‘몸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계약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호중, 2002: 28; 하태영, 2002: 463). 인간의 성은 인격 및 몸 자체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는 인격과 인간의 신체적 자유에

5) 이러한 윤리적 잣대는 성매매 금지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 미국에서의 성매매 금지는 질병 전염으로 인한 對개인적 해악이나 다른 범죄로의 확산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다만 도덕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다. 성매매의 금지를 주장하는 ‘순결 서약’은 칼뱅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들에 따르면 여성의 역할은 남편의 천한 세속적인 본성을 고상하게 정화시키는 정신적인 존재이다.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에서도 여성들의 도덕적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순결은 여성들이 시민권을 가지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다(karman, 2001: 313-314).

6) 이에 대하여 Karman은 실제 성매매가 다른 범죄와 여러 면에서 연결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범죄와 연결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범죄화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성매매가 AIDS를 비롯한 성병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단언하기는 힘들다(karman, 2001: 314-315).

대한 매매와 다를 바 없고, 그 성격이 노예매매와 유사하므로 당연히 범죄가 되어야 한다(변화순 등, 2005: 26; 하주영, 2002: 335).

넷째, 성관계는 애정과 친밀함에 기초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성관계는 부도덕하다는 입장에서 성매매의 불법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논거는 최소한 여성혐오주의나 이중적 성 잣대가 없어 다행이지만, 성에 대한 개인적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김성천, 2004: 131; 하주영, 2002: 332).

다섯째, 대부분의 성매매는 포주 등의 알선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때 성매매는 불평등한 노예계약이나 채무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발적인 성매매로 볼 수 없다. 포주나 알선업자를 끼고 있는 성매매는 포주와 성구매 남성간의 합의에 불과하여 성매매여성과 남성사이의 진정한 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허경미, 2006: 137), 성매매여성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성매매 당시에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가지지 못한다(김성천, 2004: 134).⁷⁾ 또한 포주나 알선업자를 통하는, 특히 집결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혹은 약물에 중독 된 상태에서, 혹은 감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매매의 속성이 감금, 폭행, 착취 등의 반인륜적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난하고 범죄시키는 사회적 인식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본다(조국, 2003: 133-134).

2.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거나 일정한 지역 내에서

7) 이는 프리랜서형 성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성매매에 비하여 다소 자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사회의 남성지배적 권력관계가 서구보다 뿌리 깊고 폭력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남성이 행사하는 자율성과 여성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여 프리랜서형 성매매여성까지도 진정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이호중, 2002: 28).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성매매 발생 및 성매매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성노동과 성거래행위 자체를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인정한다. 비범죄화는 현재 호주의 일부 주와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형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범죄화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어떤 종류의 성매매를, 어느 정도까지 비범죄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소 개인 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자발적인 개인적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덕인, 2008: 179-180; 조국, 2003: 281; 김성천, 2004: 137; 임웅, 1999: 108).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성매매라는 현상에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성매매를 단지 사회적 일탈행위로 간주할 뿐 국가형벌권의 발동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형벌권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만으로는 발동될 수 없고,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발동된다(하주영, 2002: 345; 이덕인, 2008: 162-165). 그런데 성매매에 있어 누가 누구의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단순성매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동의 하에 거래가 성사되므로 피해자가 없다(Schur & Bedau, 1974: 6). 즉 성매매는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지도, 특정인을 피해자화 하지도 않으므로 형벌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같은 맥락으로 성매매가 그 사회의 성도덕적 잣대에 의해 지탄받을 일이고, 이를 보는 타인이 혐오감을 갖는다고 하여도 법으로 규제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김성천, 2004: 127-129; 이경재, 2007: 173). 이처럼 비범죄화 근거의 핵심은 형법의 보충성원칙 내지 성매매가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한편으로 성매매 비범죄화는 모든 성노동자 여성들이 범죄자의 신분이 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이성숙, 2006: 133).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가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식으로든 성매매여성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고, 오히려 여성을 착한 여성과 나쁜 여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초래하기 때문에(이경재, 2007: 193) 합

법화보다 오히려 비범죄화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3. 성매매 합법화(규제주의)에 대한 논의

성매매 합법화주의는 국가가 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성매매를 허용하여 이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관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정한 지역 내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거나 허가를 받은 여성과 업소만 영업을 하게하고, 호객행위나 광고행위 등에 일정한 규제를 두는 등 국가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법화주의에서 성매매여성들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의 빅토리아주 등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며, 최근 이러한 기조는 확산추세에 있다. 근래에 와서 성매매 합법화의 추세가 번지고 있는 까닭은 성매매를 현실적으로 근절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합법화하는 편이 성산업 통제나 성매매여성 권익향상을 위해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범죄화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라는 행위가 성적 일탈행위일 지라도 법적으로 범죄시 될 만큼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위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하주영, 2002: 347).

둘째, 다수의 학자들이 공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이며, 또한 합법화의 목소리에 가장 힘을 실어주는 근거는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성매매 범죄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받는 신체적 폭행과 감금, 착취 그리고 성구매자로부터 받는 폭행과 모욕행위 등의 상황에서 윤리적 낙인과 범죄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경찰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김성천, 2004: 133-134; 김은경, 2002: 50; 하태영, 2002: 472). 만약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성매매여성들에게 가해지

는 폭행, 감금, 불법적인 계약 등 포주와의 불평등한 관계도 개선될 것이고, 성구매자로부터 받는 폭언이나 폭행, 채권불이행 등의 상황에서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최소한 형사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여성에게 노동자적 지위를 확보해 주어 노동자로서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게 한다.

부가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성매매산업에 대해 국가가 관리·감독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성산업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 통제할 수 있으며, 경찰과 공권력은 불법적인 성매매 단속에 집중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범죄를 줄이고, 에이즈 등의 성병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성숙, 2006: 131-132; 하태영, 2002: 4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합법화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성매매를 합법화 한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합법화의 부정적 효과 때문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첫째, 성매매 합법화는 오히려 성산업의 증가를 초래했다. 네덜란드⁸⁾의 경우 섹스산업이 팽창하여 전체 경제의 5%에 달하게 되었고, 1984년 합법화한 호주의 빅토리아주 역시 1984년 40여 곳이던 사창가가 1999년 94군데로 늘어났다. 1992년부터 제한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해온 스위스의 사례를 보아도 합법화 이후 몇 년 동안 성매매 업소가 두 배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Raymond, 2005: 144-145).

둘째, 불법적인 성매매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도 외국인에 의한 성매매는 대체로 불법이다. 독일의 경우 성매매여성의 약 80%가, 스위스는 약 50%가 불법체류 중인 외국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역시 성매매여성 중 80%가 이민자들이거나 불법체류자들이며, 성매매여성 중 70%는 미등록상태라고 한다(여성가족부, 2006: 15-61). 이처럼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도 외국인에 대해 성노동자의 지

8) 독일은 성매매 비범죄화주의에서 2001년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도 자발적 성매매 비범죄화주의 입장에서 2000년 성매매 업소와 알선행위를 합법화하면서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15-61).

위를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불법체류자인 성매매여성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성노동자로서 의무와 권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흔히 감금과 폭행,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면서 합법화의 테두리 밖에 위치한다.⁹⁾ 또한 자국민인 경우도 세금회피나 신분노출을 이유로 불법적인 성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⁰⁾ 우리나라 역시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동남아나 동유럽 여성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성노동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들 대부분은 불법적인 성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자연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여성들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성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관리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노동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성산업이 팽창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서 노동시간은 증가하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성서비스까지 제공해야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Raymond, 2005: 146; 14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성매매 합법화가 성산업의 통제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성매매 합법화가 성산업을 급격히 팽창시킬 뿐 성매매여성의 권익과 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심지어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의 건전화·양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 오히려 성매매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한다(여성가족부, 2006: 72).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성적 착취구조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의

9) 이러한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특성으로 몇몇 나라에서 성매매 합법화의 긍정적 효과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10)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성매매여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네덜란드처럼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특히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산업이 다양화되면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여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국제적 인신매매가 증가할 것이고, 합법적인 성노동자에 비해 불법신분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대한 착취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여론이 높다. 또한 합법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인지하더라도 성매매라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정서적인 이유로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를 근절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착촌은 사라지고 있으나, 성산업 자체는 더욱 팽창하고 음성화되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특정 페미니즘 시각이나 형사정책적 논쟁을 뛰어 넘어 보다 새로운 접근과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국가차원에서의 성산업관리 및 규제 가능성 을 실험해보고자 하였다. 비록 여러 측면에서 성매매 합법화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성매매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성산업의 합법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로 성매매 산업과 유사한 직업환경을 가진 유흥업소내 여성종업원들 및 그 업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및 면접조사를 계획하였다. 이들을 인식조사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 외에도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이들이 국가정책에 얼마나 동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정책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조사에 앞서 밝혀둘 것은 유흥업소내 여성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그들의 합법화 혹은 비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성산업을 규제할 경우 당사자로서 그들의 의무사항들을 얼마나 잘 이행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여성종업원들의 인식조사와 업주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바라는 성매매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나아가 그것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성매매정책에 대한 유흥업소내 여성종업원들의 인식조사

이 연구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에 대한 인식, 즉 현재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합법화 이후 관련 문제들에 대한 인식, 성매매여성들에게 부과될 여러 혜택 및 의무 사항에 대한 태도, 앞으로의 성매매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집창촌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성매매가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나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실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립살롱 형태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종업원들을 조사대상자로 선택하였다. 이들 중에는 과거 집창촌에 있었던 여성들도 소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의 본질과 대책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서는 탈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조사는 몇몇 있으나, 실제 성매매여성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탁상공론으로 그칠 수 있는 성매매정책에 대해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국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 등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단순무작위표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설문지역을 조사가 용이한 충남 천안시로 한정하였다. 천안 내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동을 선정한 후 무작위로 12개의 유흥업소를 선정하였고, 업주들의 동의를 받은 10개의 업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11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무성의하게 응답한 13개의 설문지를 조사에서 제외하고 1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업소에 방문하여 배부하고 회수하는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을 취하였으며, 조사는 2008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이 요약되었다. 연령은 26~30세가 48%로 가장 많으며, 31~35세가 34%, 20~25세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을 질문한 결과, 2~3년이 24%, 1~2년이 2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근무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유흥업소에서의 근무 이외에 따로 하는 일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91%가 따로 하는 일 없이 이 일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종 류	빈 도(명)	비 율(%)
연 령	19세 이하	0	0.0
	20~25세	12	12.0
	26~30세	48	48.0
	31~35세	34	34.0
	36~40세	6	6.0
	합 계	100	100.0
경 력	6개월 이하	6	6.0
	6개월~1년	17	17.0
	1~2년	23	23.0
	2~3년	24	24.0
	3~4년	8	8.0
	4년 이상	22	22.0
	합 계	100	100.0
겸 업 여부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	6	6.0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	91	91.0
	기 타	3	3.0
	합 계	100	100.0

2. 우리나라 성매매의 불법사실에 대한 인지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사실상 수사기관이 이를 단속하지 않고 허용되는 행위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로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유흥업소 내 여성종업원들 또한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표 2>와 같이 예상했던 것처럼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우리나라 성매매의 불법사실에 대한 인지

항목	알고 있다	모른다	합 계
비율(%)	100.0	0.0	100.0

3.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성매매정책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시스템안의 여성들은 결코 섹스산업이 합법화되길 바라지 않는다(Raymond, 2005: 140-152).”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매매유형과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격한 변화일로에 있었다. 전통적인 사창가는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겸업형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확산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였다. 적어도 페미니스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통적 성매매 업소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에 적용될지언정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성매매에 있어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을 취했으면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86%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표 1>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이 따로 하는 일 없이 유흥업소 내 근무를 전업으로 하

고 있으며, 만약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다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행해 단속의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에 대해 국가가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비범죄주의에 대한 의견도 13% 나타났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현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은 1%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종업원들 대부분은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성매매정책

항목	금지주의	합법화주의	비범죄주의	합 계
비율(%)	1.0	86.0	13.0	100.0

4. 우리나라 성매매의 합법화에 따른 효과

1) 성매매 합법화 후 관련 문제들에 대한 인식

다음은 우리나라가 성매매를 법으로 인정해준다고 가정하고 이후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 여성종업원들에게 질문하였다. 즉 성매매가 합법화된 후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성매매 합법화 후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답변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는 답변이 31% 나타났다.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겠지만,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3%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들은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하루 아침에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적대적인 사회적 인식을 걷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이덕인, 2008: 180), 오랜 세월 동안 우리사회에서 매춘녀, 윤락녀로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

들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성매매 합법화 후 성매매여성의 근무여건 및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0%, ‘보통이다’는 44%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즉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업소 자체가 국가의 규제 및 관리대상이 되면 업주들은 성매매여성을 정식근로자로 대우해 주게 될 것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최소한 항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므로 당연히 근무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셋째, ‘성매매 합법화 후 성매매산업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는 33%로 나타났다. 성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성매매산업 또한 쉽게 사라질 수 없으며, 성산업이 보다 손쉬운 돈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더구나 성매매를 금지가 아닌 합법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되면 성매매 업소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48%의 보통이란 응답을 살펴보면, 성매매가 합법화된다고 해서 성매매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매매 합법화 후 성구매자들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는 답변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30%를 차지하였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본래의 사회적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인정해준다고 우리나라 남성들이 당장 성매매현장으로 달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즉 성매매가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여성을 찾는 남성들이 갑작스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마치 당장에라도 이러한 부적절한 성관계가 확산되어 사회의 성도덕이 일거에 몰락하거나 여성에 대한 착취가 더 공공연히 자행될 것이라는 불확실한 예견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덕인, 2008: 180)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섯째, ‘성매매 합법화 후 성매매에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또한 성구매자의 증가에 대한 질문결과와 같이 ‘보통이다’이라는 답변이 47%,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34%로 나타났다. 성매매

가 합법화된다고 하여 우리 사회가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합법화 후 이에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섯째,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나도 성매매에 종사할 생각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5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8%로 나타났다. 오늘날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종업원들이나 과거 집창촌에 있었던 성매매여성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¹¹⁾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만 있다면 불법일 때보다는 합법화 되었을 때 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상, 즉 위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근무여건 및 환경, 업주와의 관계 등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표 4〉 성매매 합법화 후 관련 문제들에 대한 인식

(단위 : %)

내 용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합 계
성매매 합법화 후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좋아질 것이다.	0.0	5.0	63.0	31.0	1.0	100.0
성매매 합법화 후 성매매여성의 근무여건 및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0.0	4.0	44.0	50.0	2.0	100.0
성매매 합법화 후 성매매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이다.	2.0	16.0	48.0	33.0	1.0	100.0
성매매 합법화 후 성구매자들은 증가할 것이다.	1.0	30.0	49.0	19.0	1.0	100.0
성매매 합법화 후 성매매여성들은 증가할 것이다.	1.0	34.0	47.0	18.0	0.0	100.0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나도 성매매에 종사할 생각이 있다.	0.0	3.0	38.0	57.0	2.0	100.0

11)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 업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할 경우 가장 큰 이유가 “기대한 돈을 벌 수 있어서(41.15%)”, 두 번째가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22.83%)”로 나타나 다수의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남서울대학교, 2006: 14).

2)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이행사항에 대한 태도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이를 영업으로 하기 위해 우선 여성들은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여성들은 관공서에 등록하고, 외상이라든가 화대(花代) 또는 영업장소 등을 규제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성병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오늘날 성매매가 국가에 의해 통제 또는 부분적 금지주의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해 경찰 및 행정당국이 성매매를 허가해 주되 엄격한 세금 징수, 업주와 종업원들에 대한 등록대장 관리, 종업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을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다(하태영, 2002: 469; 조국, 2003: 267).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그에 따르는 혜택이나 의무사항을 따르겠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즉 성매매가 법으로 인정될 경우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사항들을 지키거나 혜택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내가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게 된다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낼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입장이 60%, ‘매우 그렇다’가 11%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일인 만큼 그에 따른 세금징수 의무화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성매매여성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7%, ‘매우 그렇다’가 35%로 나타나 의료보험혜택 또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매매여성들은 항상 각종 성병 및 AIDS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검진과 의료보험혜택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권 권리로 보장되어 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이란 이유로 성매매여성들은 직업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셋째,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내가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게 된다면,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시청에 성매매근로자로 등록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통이다'가 33%, '그렇다'가 47%, '매우 그렇다'가 2%로 나타났다. 질문 시 성매매근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기타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름과 주소까지 밝히는 성매매근로자 등록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49%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등록절차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며,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여성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내가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게 된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은 손님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내가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게 된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손님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가 각각 58%, 57%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가 17%, 23%로 나타나 응답자의 다수가 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다고 대답했다. 실제 이들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형사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대답이 71%,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이 82%였으며, 성근로자로 등록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49%가 긍정을, 33%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유럽 몇몇 나라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결과와는 달리, 성매매 규제주의가 가져올 몇몇 규제에 대하여 성매매여성들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성매매 규제정책의 성공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들의 건강, 노동환경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표 5〉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이행사항에 대한 태도

(단위 : %)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내가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게 된다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낼 것이다.	1.0	5.0	23.0	60.0	11.0	100.0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성매매여성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2.0	8.0	8.0	47.0	35.0	100.0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내가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게 된다면,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시청에 성매매근로자로 등록할 것이다.	3.0	15.0	33.0	47.0	2.0	100.0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내가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게 된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은 손님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0.0	8.0	17.0	58.0	17.0	100.0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내가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게 된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손님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0.0	6.0	14.0	57.0	23.0	100.0

5. 우리나라 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한 인식

다음은 성매매 합법화 후 관련 문제들 및 그에 따른 이행사항 등에 대해 질문한 이후,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인식이 처음과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나는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의 응답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는 의견은 22%로 나타나 여전히 합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표 3>의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성매매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이행사항에 대한 태도 등을 질문한 이후에는 75%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나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이다'는 질문에 대해 5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아주 적은 차이지만 이 또한 <표 3>의 합법화에 따른 이행사항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기 전보다 6%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나는 성매매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질문에는 71%로 높아 <표 3>에서의 답변보다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합법화 이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질문하기 전과 후 응답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금징수 의무, 성매매 근로자로의 등록 등의 문제가 아직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6> 우리나라 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한 인식

(단위 : %)

내용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합 계
나는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0	2.0	22.0	64.0	11.0	100.0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나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1.0	5.0	41.0	52.0	1.0	100.0
나는 성매매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0	4.0	24.0	67.0	4.0	100.0

위 인식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여성종업원들은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비록 성매매에 대한 국가정책이 단순히 성매매여성의 입장만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당사자인 이들의 목소리를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성매매가 근절될 수 없고 성매매여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이상 이와 같은 인식조사를 통해 성매매여성들의 처지와 바램을 반영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해 필요가 있다고 본다.

IV. 성매매정책에 대한 유흥업소 업주들과의 심층면접결과

다음에서는 오늘날 성매매산업 및 현 규제정책에 대한 유흥업소 업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유흥업소에 종사한 지 약 10년의 경력이 있는 업주들을 인위적으로 표집하여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4명에 대해 면접이 이루어졌다. 2008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총 3회의 면접을 수행하였으며, 각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각각 2시간 정도였다. 심층면접은 업주들을 통해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실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정당성, 성매매산업의 규제가능성 등의 질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참고로 심층면접결과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 응답의 요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 우리나라 성매매의 유형 분석

성매매규제에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 강요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일부 학자들은 강요나 착취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성매매가 강요당하지 않은 성매매, 즉 여성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성매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러한지는 유흥업소내 여성종업원들의 실상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의 자발성 여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직업소개소를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 또한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매매여성들이 빈곤이나 가정폭력, 가정해체의 희생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이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이러한 직종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성매매여성이 포주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빚을 갚지 않거나 업주에게 반항하는 경우, 말 그대로 강요나 착취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완전히 독립적·자율적으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유흥업소 내에서도 선불금제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혹시나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은 정말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결정에 따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2. 현행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성매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우리나라가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가시적으로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지, 더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완전히 잠식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현행 성매매규제정책은 집창촌을 중심으로 성매매업소가 줄어드는 등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집행력이 약해질 것이고 본래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단속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음성적·개인적 성매매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 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확보¹²⁾되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다(목진휴·홍성길, 2006).

성매매를 규제한다고 해서 윤락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성매매규제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음성화되고, 더욱 퇴폐화되어 예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안마시술소, 휴게텔, 심지어는 스크린골프장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대딸방, 인형방 등 신종 퇴폐업소도 생기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규제를 통해 집창촌이 문을 닫는 등 밖으로 볼 때는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숨은 성매매산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성매

12) 정부는 단속업소 전담단속반 등 관련 수사 인력 1,447명(2006년 기준)을 보강하고, 3년간(2005-2007년) 282억을 지원할 계획이나, 현장 활동가들은 자활지원 관련 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권영상, 2007: 229).

매규제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업소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인터넷영역에서의 성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에는 감소하였으나, 마사지 업소 밀집지역의 성매매화 비율은 60.5%로 나타나 안마시술소 두 곳 중 한 곳은 성매매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의 매출액 또한 약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음성적 성매매의 증가를 추정할 수 있다(권영상, 2007: 235). 결과적으로 오랜 역사와 보편성이란 특징을 지닌 성매매는 처벌을 통해서도 완전히 사라지기란 힘들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매매 산업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접대문화가 주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술로 인한 접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제정 이후에는 50만원 이하 결제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윤락에 대한 사용비는 전혀 결제되어질 수 없게 하는 등 법인카드의 사용제한으로 인해 간단한 식사 및 운동 등으로 접대하는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접대문화는 술과 윤락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접대를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성매매산업은 그리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있어서 성은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라는 수요자 때문에 성매매여성이라는 공급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쉽게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성들이 성매매여성들을 찾는 이유가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와 편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성매매를 범죄라고 한다 해서 남성의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성의 성의식이나 접대형태가 완전히 개선된다면 점차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¹³⁾

13) 성매매자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하는 이른바 '존 스쿨' 이수자 10명 중 4명은 당국이 단속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성을 구매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존스쿨 수료자의 60% 가량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구매에 나섰다가 적발돼 들어온 것으로

3. 우리나라 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

1) 성매매 합법화의 정당성

3장 여성종업원들의 인식조사결과에서도 성매매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매매정책에 대한 일부 학자들 또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성매매행위가 범죄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즉 성매매 합법화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무엇보다 여성종업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여성들의 자진신고를 통한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여성들 스스로가 또 다시 이러한 일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법적인 일이 아니니 숨어서라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음성화되고 퇴폐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¹⁴⁾

다음으로 집창촌의 형태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말인지, 또 처벌해야 되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매매는 형벌의 대상이 될 만한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성매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선이 좋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 입장에서 떳떳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단속의 눈을 피해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손님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기관

나타났다.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됐는데도 성구매에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들 중 41.9%(224명)가 '단속을 할지 말지 불확실해 성구매에 나섰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31.8%(170명)은 '성욕을 참을 수 없어 성구매에 나섰다'고 답했으며 25.6%는 '접대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 경제, 2008년 12월 1일자).

- 14) 집창촌 지역을 담당했던 김강자 서장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한시적 규제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성매매의 유형을 크게 공개형인 집창촌과 음성형으로 구분하고, 음성형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집창촌은 국가관리하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수준이 낮고 별다른 기술은 없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집창촌 여성들은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하여 인권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탈성매매를 권유하는 편이 옳지만, 비생계형이면서 주택가에 깊숙이 침투해있는 음성형 성매매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클리 경향, 2004년 10월 15일자).

에 떳떳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손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을 구매해 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성매매여성뿐이겠지요.

그리고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업주로서는 관공서나 경찰기관 등 단속기관과의 유착관계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들 간의 유착관계가 심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관계를 위해서 이들을 거꾸로 접대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이후 이런 현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2)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효과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업주나 성매매여성들에게 세금납부, 4대 보험 가입, 업소등록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과연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는지, 성매매여성들의 근무여건 및 환경 또한 개선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항들을 확실히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들이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행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의료혜택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AIDS 및 성병확산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근로자로 등록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앞으로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방향

그렇다면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그 이후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성매매산업이 활성화될 것인지, 성구매자의 수가 증가할 것인지, 성적으로 퇴폐된 국가가 되지 않을지 등 여러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글쎄요.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이 성매매 합법화 때문에 바뀌지는 의문입니다.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 중에서 “보이지 않았던 잠재적인 성구매자가 표면에 나타나 성구매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기본적인 성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 남자들은 성매매가 비윤리적이라거나 범죄라는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처벌위험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단속되지 않을 확률이 99%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도 성매매를 원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지, 단속될까 두려워 참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수요와 공급이 절대 억제된 상황이 아니기에 향후 수급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산업은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법화 된다하여도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한 하지 않을 사람은 이후에도 절대 안 할 것이고, 할 사람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할 것을 세 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 성매매를 합법화하게 된다면 성매매산업을 투명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산업에 기생하던 여러 악덕업주 등을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매춘업소를 관라 감독함으로써 포주행위와 조직적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합법화에 따라 성산업에 관한 다양한 마케팅이 증가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가가 성산업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성매매 단속처벌처럼 법만 만들어 놓고 99%가 관라·감독되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성매매 합법화 후 성매매여성들이 이를 직업으로 정말 선택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일에 대해 한번쯤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몰래 일하고 있는데, 합법화되면 근로자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직업화된다면 할 수 있는가, 즉 도덕적으로 부끄러워서 숨기고 하는 여성들은 이것이 합법화 되었을 때 드러내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신들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여성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합법화 했을 때 사회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은 줄어들 것이며, 이들의 의식도 변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을 꺼리는 여성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업주들의 응답결과처럼 과연 등록을 꺼리는 성매매여성들이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포기할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외국사례처럼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성매매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할 줄 아는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여성이란 딱지를 붙이고 싶지는 않으나,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이 일 뿐이므로 쉽게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불법적인 성매매여성과 업주로 인하여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성매매정책

그렇다면 유흥업소 업주들은 앞으로 국가가 성매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제시했으면 하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았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특히 자발적인 성매매는 합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주든 성매매여성이든 당당히 세금 지불하고, 사회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요 및 착취에 의한 성매매는 분명 해결될 것입니다.

위 인식조사 및 심층면접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유흥업소 내 여성종업원과 업주들의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의견이 매우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여성종

업원 75%가 ‘성매매합법화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업주들 또한 성매매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여성종업원과 업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종업원의 경우, 성매매합법화에 대해 8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성매매합법화에 따르는 이행사항에 대해 질문한 이후에는 75%로 감소된 것을 보면 이들에게 세금징수, 성매매근로자로의 등록 등은 꺼려지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매매의 합법화 후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여성종업원과 업주들은 합법화로 인해 성매매산업이 급성장한다거나 성구매자들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업주들은 합법화된다고 하여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하루 아침에 긍정적으로 바뀌어 안 하던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의 성매매규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성매매에 대한 찬반입장만을 주장하면서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으며, 반작용으로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산업이 증가하고 있어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을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만을 보고 성매매특별법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산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성매매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목하였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성매매여성이 아닌 유흥업소내 여성종업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에 대한 성매매여성들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종업원들의 인식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유추해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식조사결과, 이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세금 납부, 근로자 등록여부 등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이행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의료서비스 등의 혜택 또한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 몇몇 나라에서 불거졌던 미등록 및 불법적인 성매매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연 성매매 합법화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불법적 성매매가 근절되거나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눈에 띄게 향상되거나 혹은 그들을 향한 비난과 싸늘한 시선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성매매의 합법화로 야기될 성산업의 증가와 이것이 우리사회에 미칠 악영향 역시 도외시할 수 없는 과제이다. 성매매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게 되거나 성풍토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등의 건전한 성의식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합법화에 공감하는 이유는 성매매여성들을 둘러싼 일련의 환경들이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근절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책가에 침투한 변종 성매매업소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성매매에 나서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성매매특별법만으로 우리사회의 성매매를 적절하게 통제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올바른 정책인 것으로 여겨왔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금 현실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범죄로 보는 법질서가 오히려 반인륜적인 상황을 조장하고, 이를 뿌리 뽑는

작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만약 성매매가 범죄행위가 아니고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라고 평가되어 왔다면, 성매매여성이 벌써 노동조건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비윤리적이라고 매도하는 사회적 시각이 성매매환경을 반인륜적으로 만든 주범인 것이다. 결코 성매매 자체가 속성상 반드시 반인륜적 노예노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김성천, 2004: 133-134).

이제 성매매 합법화에 따르는 여러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성매매 관련 업계에 종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시민과 형사사법기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매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성매매처벌에만 집중하여 그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볼 때이며, 관리체제만 잘 갖추어진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주면서 그 여성들이 얻게 되는 의료 및 보험혜택 등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성매매 합법화는 최소한 성매매산업의 음성화 등으로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더 이상 타락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성매매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와 포용력을 머금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바꿔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영상. (2007).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단속과 처벌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1): 221-241.
- 권오명. (2004).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7: 187-209.
- 김성천. (2004). “성매매의 비범죄화”, 「중앙법학」, 6(4): 117-138.
- 김은경. (2002).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형사정책」, 14(2): 37-71.
- 남서울대학교. (2006).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 남서울대학교.
- 목진휴·홍성걸. (2006).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 15(1): 237-262.
- 박혜진. (2007).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형사법연구」, 19(4): 373-394.
- 여성가족부. (2006). 「성매매관련 해외정책사례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부. (2001).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여성부 권인증진국 권익기획과.
- 윤덕경·변화순·박선영. (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경재. (2007). “매춘에 관한 다양한 견해(번역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18(1): 171-198.
- 이덕인. (2008). “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형사정책」, 20(1): 153-185.
- 이성숙. (2006). “한국 성매매 특별방지법에 투영된 페미니스트 오리엔탈리즘: 성노동자가 말할 수 있는가”, 「담론 201」, 9(2): 107-139.
- 이주선. (2006).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시장경제 이슈 페이퍼」, 24.
- 이호중. (2002).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매매에 관한 여성학적 담론과 형사정책의 담론 사이에서”, 「형사정책」, 14(2): 7-36.
- 임 응. (1999). 「비범죄화이론」, 법문사.

- 조 국. (2003).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형사정책』 15(2): 255-288.
- 하주영. (2002). “성매매는 범죄인가?”, 『시대와 철학』 13(2): 325-352.
- 하태영. (2002).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7: 453-485.
- 허경미. (2006).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외국문헌〉

- Andrew Karman. (2001). *Crime Victim*, 4th ed.,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 Edwin m. schur & Hugo Adam Bedau. (1974), *Victimless Crime: two sides of a controvers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Raymond, J. G. (2005),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정세와 노동』 4: 140-152.
- Scoular, Jane and O'Neill, Maggie. (2007), “Regulating Prostitution: Social Inclusion, Responsibilization an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Reform,” *Br. J. Criminol.* 47: 764-778.
- Weitzer, Ronald. (2009), “Legalizing Prostitution: Morality Politics in Western Australia”, *Br. J. Criminol.* 49: 88-105.

〈기타〉

- 경주인터넷신문, 2008년 9월 16일자,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 조사결과”
- 메디컬투데이, 2008년 10월 14일자,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등록자·검진자 수 급감”.
- 헤럴드 경제, 2008년 12월 1일자, “성매매 남성 40% ‘단속 안할거 같아 구매했다’”.
- 위클리 경향, 2004년 10월 15일자, “정화조 깨뜨려 한강 전체 오염시키는 격”

【Abstract】

Investigation of Recognition on Domestic Policies on Sex Trafficking : Centered on Recognition Investigation of Women in Merry- making Plac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Owners

Jeong, Seung Min

Hong, Tae Kyung

Since the Acts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was enforced in 2004 and intensive control was performed on red-light districts, sex trafficking has gotten even more negative without any sign of eradication. Prostitutes who had to do sex trafficking because of human traffics or advance payment were protected as victims and supported by the nation, but still many women are not 'victims' as the subject of protection by the Acts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 majority of women are only prostitutes illegally doing sex trafficking and therefore, their human rights are still in a blind spo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legalization of sex trafficking when focused on real problems including more reasonable policies on sex trafficking and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of prostitutes rather than specific feministic views or discussions of criminal policies. For doing this, the author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of women in merry-making places and perform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owners on problems related to the legalization of sex trafficking.

The results of the recognition investigation, 86% said the legalization

of sex trafficking is reasonable, which indicating their desire for the legalization. Also, 71% and 49%, respectively, answered positively when asked of their duty performance including tax and employee registration procedure, if they may be engage in sex trafficking after the legalization.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owners showed that they said the legalization would be beneficial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s or rights and interests of prostitutes, answering that it would be better to legally run their places with paying taxes and performing several duties.

Such results indicate that the legalization of sex trafficking might be successful in our society when the government prepares satisfactory polices and performs appropriate management and surveillance. The mischief of the legalization of sex trafficking cannot be ignored, but it is needed to make an effort to prepare more reasonable policies on sex trafficking when the existing policies fail to eradicate sex trafficking.

Key Words : Sex Trafficking, Prostitutes, Policies on Sex Trafficking, Legalization of Sex Trafficking